

2023년 제7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313-12(수련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	2023. 7. 21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연수구청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		
	지 번	313-12	관련지번			
	대지면적	2,972.8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560.22㎡	건폐율	52.4832%	층 수	지하 : 1층 지상 : 6층
	주 용 도	수련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, 일반철골구조	건축물 동수	1동
	최고높이	28.10m	용적률	191.2046%	연면적 합계	7,896.96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	
	(구조)분야	[권고사항] ○ 구조4: -1SC2검토시에 Cmx, Cmy에 1.0을 적용하여 재검토 권장 (기둥 양단사이에 횡하중이 있는 경우) ○ 구조체에 지지되는 전면외장재(복층유리) 하지부재의 설계적정성에 대하여 구조설계자가 검토하기 바람.				
	(토질)분야	○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바람.				

심의결과	[○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				
	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